

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

- 대표자 성명:
- 기관·단체의 명칭:
- 기관·단체의 소재지:
- 지정조건:

「항공안전법」 제135조제10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